



해양수산부

보 도 자 료

대한민국 대전환
한국판뉴딜

보도 일시	2022. 5. 2.(월) 석간 2022. 5. 2.(월) 06:00	배포 일시	2021. 4. 29.(금) 오후
담당 부서	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	책임자	과 장 신재영 (044-200-5300)
		담당자	사무관 신영락 (044-200-5301)

해양쓰레기,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

- 5월 2일부터 안전신문고 해양쓰레기 신고메뉴 신설 -

해양수산부(장관 문성혁)는 5월 2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해양쓰레기 신고 메뉴가 신설되며, 이에 따라 일반 시민도 해양생태계와 바다경관을 훼손하는 해양쓰레기를 쉽게 신고하고,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.

<안전신문고 개요>

(운영주체/기간) 행정안전부 / '14년~계속

(신고내용) 안전(교통위반, 환경오염, 도로파손 등), 생활불편(불법광고, 유해업소, 에너지낭비 등)

(운영절차) 현장신고(사진촬영 등) → 지자체·해수청 민원시스템 이송 → 접수 후 처리

('21년실적) 총 4,940,870건(불법주정차 58%, 안전신고 28%, 생활불편 10%, 코로나 4%)

국내 해안선은 약 1.5만km에 달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행정력만으로는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모든 해변을 감시하는 것이 곤란한 것이 현실이며, 기존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된 5백여만건의 신고 중 해양쓰레기에 대한 신고는 360여건에 그치는 등 바다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었다.

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안전신문고 앱의 운영주체인 행정안전부와 협의 하여 신고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, 해양쓰레기 신고 메뉴를 신설하고, 개통시점 및 여름 휴가철(7~8월)에 안전신문고 회원(90만명)을 대상으로 홍보 알림 톱 등을 발송하여 신고를 독려하기로 하였다.

※ (예시)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해수욕장, 낚시터, 해변공원, 방파제 등 바닷가에서 본인의 쓰레기는 집으로 되가져 가시고, 바닷가에 방치된 쓰레기는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주세요!

개선된 신고체계로 해양쓰레기를 신고하는 방법은 먼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고, 생활불편 신고 메뉴의 유형 선택에서 해양쓰레기를 선택한 후 발생 장소와 내용을 사진(동영상)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. 제출된 신고는 관할 지자체(부유쓰레기나 바다속 쓰레기는 해역관리청)에서 최종 접수하여 수거하게 된다.

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“바다환경지킴이(바다환경미화원) 사업을 확대하는 등 해양쓰레기에 대응하고 있으나, 넓고 긴 해양공간을 행정력만으로 감시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”라고 말하며, “깨끗한 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해양쓰레기 신고 등 시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.”고 말했다.

참고

안전신문고 앱, 해양쓰레기 신고 화면

① 안전신문고 앱 실행 → 생활 불편 신고메뉴 및 유형 선택

안전신문고 앱 실행 후 생활불편 신고메뉴 및 유형 선택 화면

안전 신고, 생활불편 신고, 불법주정차 신고, 코로나19 신고

생활불편신고, 사진/동영상, 발생지역, 내용(추가수정가능, 900자), 휴대전화

유형선택, 촬영/앨범, 위치찾기

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

내용(추가수정가능, 900자)

생활환경을 방해하는 불편사항을 신고해주세요.
(이 메뉴에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안될 수 있습니다.)
*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신고분야 및 유형을 먼저 선택해주세요.

휴대전화

☐ 신고 내용 공유 동의

내용보기

제출, 닫기

② 신고유형 중 해양쓰레기 선택

생활불편 신고 유형 선택

불법광고물, 자전거·이륜차 방치 및 불편, 쓰레기, 폐기물, **해양 쓰레기**, 청소년 유해업소, 에너지 과소비, 기타 생활불편, 취소

③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

해양쓰레기

바닷가(해수욕장, 낚시터, 해변공원, 방파제 등)에 방치된 쓰레기, 해상에 부유하는 쓰레기, 해저에 침적된 쓰레기 등

해양쓰레기 발생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(사진 또는 동영상)와 함께 신고내용(일시, 장소, 종류, 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 등)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사진 촬영시 신고자 본인의 안전을 확보해주시고, 운전 중 휴대전화 촬영은 위험하니 삼가해 주세요.(도로교통법 제49조)

※'바닷가'라 함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함(공유수면법 제2조)

확인, 취소

④ 사진·동영상 첨부 후 제출

안전신문고 앱 실행 후 생활불편 신고메뉴 및 유형 선택 화면

안전 신고, 생활불편 신고, 불법주정차 신고, 코로나19 신고

생활불편신고, 사진/동영상, 발생지역, 내용(추가수정가능, 900자), 휴대전화

유형선택, 촬영/앨범, 위치찾기

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

내용(추가수정가능, 900자)

해안가 쓰레기 신고입니다. 즉시 수거해주세요.

휴대전화

☐ 신고 내용 공유 동의

내용보기

제출, 닫기